

빅데이터연구센터 규정

제정 2019. 9. 19.

제1조 (명칭) 본 연구센터는 호서대학교 부설 빅데이터연구센터(이하 “연구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연구센터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고도화를 통한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체 연계 컨설팅 강화를 통해 산업체 연계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및 활용을 고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소재) 연구센터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 (사업) 연구센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강화
2. 고급 빅데이터 분석 인력 양성
3. 산업체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컨설팅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
4. 국내외 빅데이터 전문가 그룹과의 공동연구 추진
5. 연구센터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 강화
6. 빅데이터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연구기반 산학연계 비즈니스화

제5조 (구성) 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센터장 : 1명
2. 운영위원 : 약간 명
3. 연구위원 : 약간 명

제6조 (위촉) 연구센터의 센터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7조 (센터장의 직능)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센터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제8조 (운영위원회)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9조 (재정) 연구센터의 재정은 각종 지원금, 국책연구비, 연구용역비, 사업수익금, 기타 기부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 (회계연도)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1조 (폐쇄) 연구센터가 폐쇄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제12조 (보고)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센터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연구센터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 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센터와 관련한 자료

제13조 (준용) 연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